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UPOV) 협약

1961년 설립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의 기구로서 UPOV 협약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으로, 2019년 12월 1일 기준으로 총 76개국의 회원이 참여중이다.

UPOV 협약 중 **"제3장 육종가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 **제5조 보호조건**

1) 만족되어야 할 기준

육종가가 개발한 식물의 종이 1)새롭고 2)다른 종과 구별되고 3)균일하고 4)안정되었을 때 육종가의 권리는 인정된다.

2) 기타 조건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이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종명이 명명되고 신청자가 계약 당사자의 법률에 규정된 형식 절차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육종가의 권리는 인정된다. 이외 추가적인 조건이나 이와는 상이한 다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6조 신규성**

(1) 기준

육종가의 권리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증식되거나 수확된 식물의 품종이 육종가의 동의에 따라 1)계약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는 육종가의 권리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계약 당사자의 영토 밖에서는 4년 이내(나무나 덩굴식물의 경우 6년 이내)에 그 종을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한 적이 없는 경우 그 품종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2) 최근 개발된 품종

계약당사자가 지금까지 어떤 식물의 속이나 종을 대상으로 이번 협정 내용이나 또는 이전 협정을 적용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협정을 적용했을 경우 그 식물의 속이나 종은 육종가의 권리를 신청한 시점 이전 이미 개발된

토종씨드림

것으로 간주하여 설령 그 식물이 제6조 1항에 규정된 시간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거나 처분되었더라도 새로운 식물로 간주하여 보호할 수 있다.

(3) 특수한 경우

제6조 1항에서 모든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동일한 정부간 조직의 회원국으로서 그 조직의 규정이 공동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회원국 간의 영토 내에서 법률이 일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 **제7조 구별성**

어떤 새로운 품종을 신청할 당시 그 특성이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때 그 품종은 다른 품종과는 구별된다. 특히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기존 품종에 등록 신청하여 육종가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품종 등록이 될 경우 신청일 이후 다른 품종으로 일반화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 균일성**

식물체의 번식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변이와 관련하여 증식된 식물체가 관련된 특성에 있어 충분히 균일하다면 그 품종은 균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안정성**

어떤 품종을 반복적으로 증식시킨 후 또는 특별한 증식 단계에서 후계세대에서도 번식된 식물체가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품종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범위**

(1) 증식 물질에 관한 법률

(a) 제15조 및 16조에 관하여 보호될 품종의 증식 물질에 대한 다음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 생산 및 재생산
- 증식 목적에 대한 조건
- 판매 또는 기타 유통
- 수출
- 수입
-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한 재고

(b) 육종가는 조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여 추인을 할 수 있다.

(2) 수락된 물질에 관한 법률

15조 및 16조에 관하여 수확된 물질이 식물 전체이든 식물체의 일부분이든 보호될 품종은 육종가의 추인 없이 증식 물질로부터 구했을 경우 육종가가 위에서 언급한 증식 물질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적당한 기회가 없었다면 제14조 1항(a)에서 규정한 7가지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3) 특정 생산물에 대한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대해 육종가가 위에서 언급한 수확 물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적절한 기회가 없었을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육종가의 승인 없이 보호될 품종으로부터 수확된 물질에서 직접 만들어진 생산물에 대해 제14조 1항(a)에서 언급된 법률은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4) 가능한 추가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대해 각 계약당사자는 제14조 1항(a)에 언급된 규정 이외의 규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종가의 추인을 필요로 한다.

(5) 기본적 유래 품종으로부터 유래되거나 변형된 품종

(a) 제14조 (1)-(4)항 규정은 다음과 관련해서도 적용한다.

1) 보호된 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단, 보호된 품종 그 자체는 유래된 품종이 아님.

2) 제7조에 따라 보호된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품종

3) 생산에 있어서 보호된 품종의 반복적 사용을 필요로 하는 품종

(b) 제14조 1항 (a) 1)의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다른 품종(원품종)으로부터 유래된 품종으로 간주한다.

1) 그 품종이 최초 품종으로부터 유래되었거나 원품종으로부터 유래된 품종으로부터 다시 유래된 품종으로서 원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품종

2) 원품종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품종

3) 유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르지만 원품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이나 유전자형의 결합으로부터 나타난 결과가 기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품종

(c)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돌연변이나 조직배양시 발생된 변이종. 원품종의 개체 선발에 의해 얻어진 변이종, 여교잡에 의한 품종, 유전공학적 변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토종씨드림

□ **제15조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예외**

(1) 강제적 예외

육종가의 권리는 다음 경우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개인적인 활동이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2) 실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3) 제14조 5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품종의 육종을 위해 사용될 경우 또는 다른 품종과 관련하여 제14조 (1)-(4)항에 언급된 행위

(2) 선택적 예외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육종가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각 계약당사자는 농민들이 증식 목적으로 그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종가가 보유한 품종이나 그 품종으로부터 생산된 수확물, 보호된 품종 또는 제14조 5항 (a) 1) 및 2) 규정에 의한 품종에 대하여 육종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